

불법체류 외국인

자진출국 제도



- 2020. 6. 30.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, 입국금지 면제, 재입국 기회 부여
- 2020. 2. 1. 이후 신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
- 2020. 3. 1. 이후 단속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
- 2020. 4. 1.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
- 2020. 7. 1. 이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

1. 불법체류 외국인(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면제)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(2019. 12. 11.)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
 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6. 30.,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 - **제출서류** :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항공권
 - **자진출국확인서 수령** : 출국 당일 '자진출국확인서' 수령(공항만 출입국관서) 후 출국
 - **비자신청** : 일정기간(3~6개월) 경과 후 ①자진출국확인서 ②본국범죄경력증명서 ③결핵검진확인서(진단서)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,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비자 신청
- ➔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자격으로 재입국, 체류지 신고 및 위법사실 없이 출국한 경우 단기방문(C-3, 90일, 12개월, 복수) 비자 발급 가능(C-3 단수비자 발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서만 허용)
- ※ 2020. 7. 1.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30% 부과, 2020. 10. 1.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50% 부과
 - ※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(감염병 치료 사실 입증 필요)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신고 시점으로 간주
 - ※ C-3(단수)로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 체류지 신고. 단 14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 신고(C-3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)
 - ※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허가(E-9), 유학(D-2), 연수(D-4), 투자(D-8) 등 비자발급 가능

2. 중소기업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-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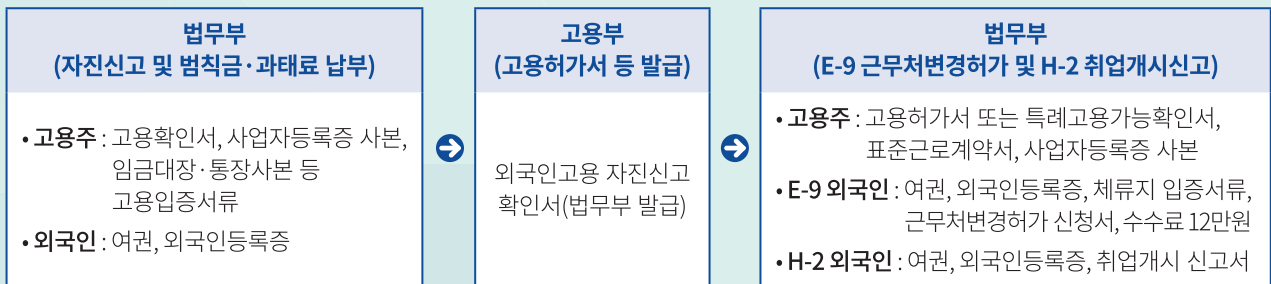
(고용주·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)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(2019. 12. 11.) 현재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(중소 제조업에 한함) 및 그 외국인
 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3. 31.(약 3개월간),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 - **허용인원** : 내국인 피보험자 기준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명까지 허용
 - **제출서류** : 고용주, 외국인 동반 출석
 - **고용주** :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확인서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(내국인 고용인원 확인용), 임금대장·통장사본 등 3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
 - **외국인** :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기한유예신청서
 - **혜택** : 피고용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(3개월) 체류허용
 - **비자신청**
 - **동포** : 단기방문(C-3-8), 방문취업(H-2), 재외동포(F-4) 사증발급
 - **비동포** :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
- ※ 고용주는 자신신고와 병행,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(고용제한 면제)



3. E-9, H-2 자격 불법취업 외국인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(2019. 12. 11.) 현재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(최초 3년, 취업활동 기간연장 받은 경우 4년 10월)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 없이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(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, 어업, 서비스업) 및 그 외국인
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3. 31.(약 3개월간),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- **세부절차 및 제출서류** : 고용주, 외국인 동반 출석



• 범칙금 감경 등 혜택

- **E-9 고용주** : 근무처 변경허가 미필 외국인 고용에 대해 범칙금 30% 부과(법무부),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(고용부)
- **H-2 고용주** :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절차 미필에 대해 과태료 부과(고용부),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(고용부)
- **외국인** : E-9은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범칙금 30% 부과, H-2는 취업개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(법무부)하고 현재 사업장 계속 근무 또는 다른 사업체로 구직 알선(고용부)